

『2025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』 공고

국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발굴·지원하기 위한 「2025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월 31일

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장

I 공고개요

□ 공고개요

- 공 고 명 : 2025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
- 주 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
- 지원 트랙별 및 지원규모

구 분	[track 1] 진출 프로젝트	[track 2] 거점 프로젝트	[track 3] 인턴십 프로젝트
지원대상	진출 추진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	기 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	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(보건 관련 협회)
역할	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	현지 정착 및 진출 멘토	기 진출기관의 종사자 파견
지원금	최대 500백만원 이내 지원	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	최대 100백만원 이내 지원
	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 지원(지원금액은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)		
매칭펀드	총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35% 이상 매칭,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 (예시) 100백만원(총 사업비) = 65백만원(국고보조금) + 35백만원(자기부담금)		
지원조건	구체적인 해외진출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 전략을 보유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		

* 자세한 내용은 “II 지원 대상 및 내용”에서 확인(중복 지원 불가)

□ 지원일정 및 선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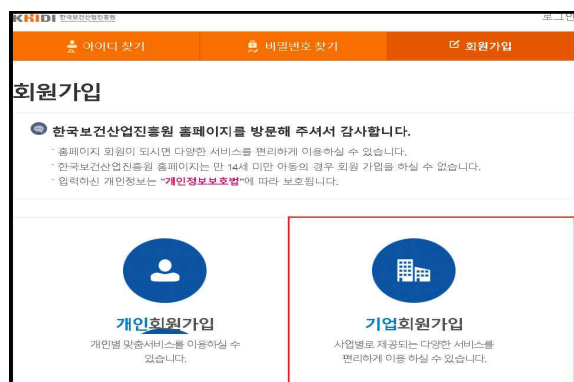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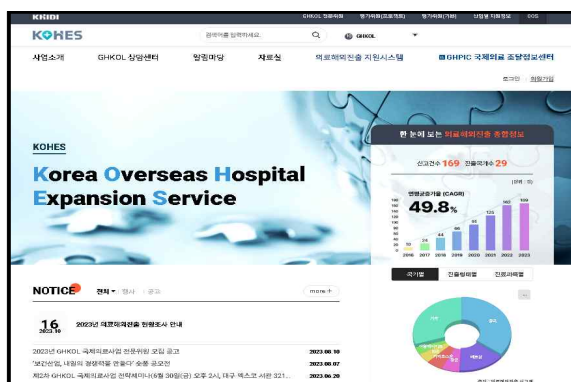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5년 2월 21일(금) 15:00 까지
 - *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(또한, 15시 이후 접수 불가)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14일(금) 까지
- 선정절차 및 일정

구분	추진일정								
	사업공고	3월	...	...	...	...	...	11월	12월
세부 일정	사업공고 (1.31.-2.21.)	참여기관 사업수행(약 9개월) 서류평가(2월5주) → 대면평가(3월1주) →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1차 교부(3월) → 사업착수 → 중간점검 → 국고보조금 2차 교부(7월) → 협약 종료(11.14.) → 최종평가(11월 중) → 정산 및 사후관리							사후관리 및 e나라도움 정산

*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방법

- 지원방법 : 제출서류 구비 후 온라인(www.khidi.or.kr/kohes) 접수
 - *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(기업회원가입 필요) 후 접수
- 제출서류 : “Ⅲ 기타사항 및 제출서류 ” 참조
- 문 의 처 : 진흥원 최철환 책임 연구원(043-713-8953, joyseeker@khidi.or.kr)
 진흥원 엄정식 연구원(043-713-8955, 13anderson@khidi.or.kr)



Ⅱ 지원 대상 및 내용

□ 사업목적

-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으로, 성공사례 창출 및 진출정보 공유를 통한 의료서비스 패키지(제약, 의료기기, 의료IT 등)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

□ 지원대상

- 의료 해외진출*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관(현재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설립기관) 및 연관산업체 컨소시엄

‘의료 해외진출’ 유형(「의료 해외진출법」 제2조 제1항)

-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
-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
-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
-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
-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제공

구분		참여여부	내용
의료기관	국내	<u>필수</u>	▪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- 「의료법」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- 「의료법」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- 「의료법」 제33조 2항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
연관산업체	국내	<u>선택</u>	▪ 진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내 유관기관(금융, 건설, 의료기기, 의료IT, 병원 컨설팅, 병원경영지원(MSO), 보건의료 관련 협회 등)

*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동반진출 시 가점 부여(의료기관+산후조리원, 의료기관+IT 기업 등)

*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은 불가하며,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

* track3 지원기관 중 협회일 경우 컨소시엄(의료기관)이 없어도 지원 가능

□ 지원내용

○ (자금 지원)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내용(정의 및 지원항목)을 고려하여 단계·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

- 신청기관은 지원 신청금액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필요

* 사업비 편성 금액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, 트랙구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

트랙 구분	지원내용	사업추진 제출서류	국고보조금 최대금액(年)
[track-1] 진출 프로젝트	▪(대상) 진출 추진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▪(지원)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 지원 ▪(역할)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	▪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, 현지 파트너 간 양해 각서 등 ▪ 투자계약서, 본 계약서, 운영계획서 등	최대 500백만원
[track-2] 거점 프로젝트	▪(대상) 기 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▪(지원) 개원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▪(역할) 참여기관 중심으로 타 진출기관 연계 협력 사업 추진, 후발 진출기관이 활용 가능한 노하우 공유	▪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, 의료 해외 진출 신고등록증 등	최대 300백만원
[track-3] 인턴십 프로젝트	▪(대상)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(보건 관련 협회) ▪(지원)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시 의료인력 동반 진출 경비 지원(인건비 제외) ▪(역할) 기 진출기관에 의료인력을 파견함으로써 해외진출 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	▪ 신규인턴 대상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	최대 100백만원

*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*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2회 분할 지급(단년도 지급 및 정산 원칙, 이월 불가)

○ (지원사업 산출물)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수행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, 과제 수행결과물은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
track 별 산출물	
[track-1] 진출 프로젝트	▪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성과물 공유(환자수, 매출액 등) ▪ 현지 시장조사 분석 ▪ Biz-Model MOA/MOU ▪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서류 절차 ▪ 의료기관 종류별 인사 세부 기준 및 규제(자격 요건 등) 보고서 ▪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, 장비, 기술 등에 적용되는 제반 규정
[track-2] 거점 프로젝트	▪ 후발주자를 위한 해외진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▪ 현지 한국의료 홍보(나눔의료, 언론, SNS 등) 건 수 ▪ 진출 희망 후발기관 대상 진출 컨설팅 제공 실적 ▪ 의료 해외진출 사업 성과물(노하우) 공유 실적
[track-3] 인턴십 프로젝트	▪ 신규인턴 대상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 ▪ 인턴십 프로젝트 만족도 조사

○ (지원조건) 수행기관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

-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(현금)을 총사업비의 35%이상 부담하여야 함

<총 사업비 구성 예시>

구분	국고보조금	자기부담금	총 사업비
예시	65,000,000원(65%)	35,000,000원(35%)	100,000,000원(100%)

* 자부담금은 35% 이상 백만원 단위로 산정

- 당해사업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,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간주하여 평가에 참조할 수 있음

* 신규채용은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 사이트를 통해 채용하며, 사업 협약 이후 채용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

* 신규인력은 사업 참여인력에 포함되어야 하며, 현지인 채용은 실적에서 제외, track 3 인턴십 프로젝트는 인건비 산정 제외

○ (지원제외) 아래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거나, 신청 프로젝트의 내용이 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 프로젝트가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
-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지원사업에서 제재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,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아래 예시와 같이 법적 및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- *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*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□ 사업추진 절차

단 계	수 행 절 차
① 신청 및 접수	• 사업 신청
② 심사·평가 및 선정	• 수행기관 선정 -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및 평가
③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	• 협약체결(전자협약시스템) • 1차 교부금 지급
④ 사업추진 점검	• 수행기관은 월간 사업 추진현황표 제출
⑤ 중간평가 및 2차 교부금 지급	• 중간평가를 통해 2차 교부금 지급
⑥ 최종평가	• 추진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 및 검토
⑦ 사후관리	• 수행기관은 해외진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 •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검증,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

* 선정기관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, 차순위 기관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하며 추가 선정된 기관은 협약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정 제출

□ 평가기준

- (평가기준) 대상과제 매력도, 대상과제 이해도, 사업추진 및 관리 방안, 수행기관 역량으로 평가
 - 신청 프로젝트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“지원대상”으로,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“지원제외”로 분류함
 - * 단,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항목	세부항목	배점
대상과제 매력도	대상국가 및 과제 매력도	35
	추진경과 및 사업추진 역량	
	프로젝트 파급효과 및 기여도	
대상과제 이해도	대상과제 이해도	15
사업추진 및 관리방안	사업 수행계획 타당성	30
	사업 신뢰도	
수행기관 역량	투입인력편성 / 인력현황	20
	기관 현황 및 유사사업 수행경력	
	예산집행계획 적정성	
평가 총점(A)		100
가산점(B)		5
최종 합계(A+B)		100

- * 평가 점수 동점인 경우 <1순위: 대상과제 매력도, 2순위: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, 3순위: 수행기관역량> 순

- (우대 및 감점 사항) 우대감점사항은 아래 표로 한정하며,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감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

항 목	점수
① ‘의료해외진출법’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 기관 * 증빙 : 의료해외진출 신고확인서	+3
②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(KAHF) 지정기관 * 증빙 :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확인서	+2
③ 의료 특화 연관산업체 구성 * 증빙 : 제조업 허가증, 의료기기 인·허가증, 사업자등록증 등 ex) 연관산업체: 산부인과+산후조리원, 의료기관+IT기업 등	+2
④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조치 받은 이력 있는 기관 - 최근 3년 동안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받은 기관	-3
최대 가산점(①+②+③+④)	±5

- * 항목별 중복 적용하여 최대 ±5점까지 가산점 획득 가능

Ⅲ 기타사항 및 제출 서류

□ 사업비 산정 기준

- 사업비 산정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(2024년) 참조, 사업비 운영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189호에 따름

간접보조사업비(국고보조금+자부담금) 사용 가능	간접보조사업비(국고보조금+자부담금) 사용 불가
- 인건비(전체 예산의 30% 이내) - 임차료(사업수행을 위한 시설, 장비, 차량 임차 등) - 여비(국내 여비, 국외 여비, 외빈초청) - 용역비(해외 마케팅, 시장조사 등) - 사업추진비(식대 및 다과비 전체 예산 5% 이내) - 일반수용비(교육훈련비, 조사 및 자료 수집비, 간행물 제작비, 전문가 자문비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) - 기타운영비(신규인력 교육 훈련비)	- 상근직원의 인건비 - 자산성 및 경상성(전화요금 등) 경비 지출 불가 - 기념품 및 선물 구매비용 불가 - 자가시설 이용료, 국내 사무실 임차료 - 유흥업소에서 사용금액 -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- 사업비 집행은 한국시간으로 집행하되 심야시간(23시~04시) 사용 불가

보조비목	보조세목	내역	
인건비 (110)	기타직보수 (02)	▪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(상여, 수당 포함)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	전체 예산의 30% 이내
	일용임금 (04)	▪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- 일용직보수,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	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 (01)	일반수용비① ▪ 인쇄비 및 유인물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▪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	
		일반수용비② ▪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물품관리위탁수수료, 업무대행수수료, 외국인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현대체송금, 전송금, 우편송금수수료 - 등기,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및 이행보증보험료 등 -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	
		일반수용비③ ▪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- 속기·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, 전문가 자문료 및 강사료	
	임차료 (07)	▪ 현지 업무수행을 위한 임시장소(현지사무소 등) 임차료(1개월 이내) ▪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사업 기간 내 임시 임차료	
	일반용역비 (14)	▪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움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(2천만원 초과 시 조달청 공고)	
	기타운영비(16)	▪ 신규인력 교육 훈련비(ex 현지 실습(임상)교육,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등)	
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▪ 국내 출장경비로써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 소요 경비 * 택시 이용 불가	
	국외여비 (02)	▪ 국외 출장경비로써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 소요 경비	
		▪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(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, 일비 제외)	
업무 추진비(240)	사업추진비 (01)	▪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	전체 예산의 5% 이내

□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서 예산 집행 및 정산 수행
 - * 지원사업 관리자 및 예산 집행, 정산 전담직원 필수
-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, 미(未)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
-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,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보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-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
-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이며,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음
- 제출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, 허위로 판명되거나,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
- 지원사업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는 향후 당해 사업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과제 수행결과물은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제 수행기관은 「의료해외진출법」에 따른 ‘의료 해외진출 신고’ 의무가 있으며, 신고기관은 추후 당해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

□ 제출서류

No	서류명	파일형태	제출 대상기관	비고
1	사업계획서	HWP	주관기관	▪ [첨부] 관련서식 활용
2	제출공문	PDF	주관기관	▪ [첨부] 관련서식 활용[서식1]
3	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(주관기관 대표 제출)
4	서약서	PDF	주관기관	▪ [첨부] 관련서식 활용[서식2]
5	국세 완납증명서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(주관기관 대표 제출)
6	지방세 완납증명서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(주관기관 대표 제출)
7	공동수급협정서	PDF	주관기관	▪ 컨소시엄 구성 시, 관련 서식[서식3] 제출
8	대표자 선임계	PDF	주관기관	▪ 컨소시엄 구성 시, 관련 서식[서식4] 제출
9	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해당 시, 주관기관 대표 제출 ▪ 연관산업체 가산점 신청 시 [서식5] 제출
10	사업추진 증빙서류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주관기관 대표 제출 *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등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서류 전반
11	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(재무제표확인원)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▪ 주관기관 대표 제출
12	신용평가 등급확인서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'24년도 발행(재무결산 기준 '23.12월말 반영분)
13	기타서류	PDF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	▪ 해당 시, 주관기관 대표 제출 ▪ 예) 국외 의료기관 설립증빙(대표자 여권, 주민등록등본, 현지 사업자등록증 등)

- *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
- *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(예, 2024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3년도, 2022년도, 2021년도 자료 제출)